

PACA에 따른 재배자 판매대행업체들의 의무사항들

여러분의 농작물이 추수가 되어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날씨 상태, 은행 대출금, 병충해 방지 작업 등을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룬 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농작물을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또한 여러분이 투자한 작물에 대해 최대의 이윤을 거두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일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농작물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배자들이 그들의 농작물을 팔고 마케팅하기 위해 판매 대행업체들을 고용합니다. 비록 계약 조건들은 다를 수 있지만, 대행업체들은 주로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그들의 수수료로 받고, 또한 기타 경비들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대행업체들은 농작물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청구서 발행 및 판매 대금 회수, 고객 불만 사항 처리, 운송 계약, 그리고 재배자에게 순수익금의 지불과 함께 판매와 경비에 관한 자세한 회계 사항을 보고합니다.

이들 대행업체들은 청과물 재배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마케팅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이런 이유로 특정 가이드라인 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선 농산물법, 또는 약칭하여 PACA는 업계에 공정 거래 행위를 장려하고 시행합니다. PACA는 재배자와 그들의 대행업체가 상호 계약 조건들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의 장을 제공합니다.

서면 계약

PACA는 농작물의 첫 배송분을 받기 전에 대행업체가 양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면 합의는 법적인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모든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여러분이 합의한 내용들을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기억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재배자와 대행업체 모두가 서명한 간단하고 문서화된 계약이야말로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해 주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행업체는 또한 재배자가 수확한 농작물의 첫 배송분을 받기 전에 서면으로 된 대행업체의 방침을 재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준수하게 됩니다. PACA에 따르면, 재배자는 대행업체에 농산물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양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양 당사자 간에 장기적이고 유익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기초를 쌓게 해줍니다.

계약의 요소들

계약은 합의사항의 본질에 따라 그 복잡함의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땅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일을 대행해줍니다. 이에는 씨앗 공급을 비롯하여 경작, 추수,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는 달리, 대행업체가 단지 농작물을 판매하고 구매상들에게 청구서를 보낸 후 수수료를 받는 일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양 당사자들의 의무 사항은 계약서 상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각각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대한 비용이나 수수료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행업체들은 그들이 대행하는 각각의 업무에 대해 고정된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기록 의무사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사항으로 대행업체들은 각 비용을 서류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 작업 수행을 위해 대행업체는 반드시 재배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행업체가 청과물을 탁송하고, 재배자를 대신하여 운송업체에 청구하며, 혹은 중개인과

위탁 상인을 이용(이러한 회사들의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재배자에게 전가시킴)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대행업체는 재배자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농산물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우 혹은 대행업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라면, 먼저 재배자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판매는 PACA에 의해서 금지됩니다. 또한, 만약 대행업체가 여러 재배자의 청과물을 모아 공동 판매를 하려고 할 경우, 청과물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 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에는 또한 중간 및 최종 회계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종 목적지에서의 농산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원래의 청구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대행업체는 재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행업체가 미 농무부 조사로 계약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상에게 청구서에 명시된 가격을 완불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재배자의 권리를 변호해주어야 합니다.

기록 의무사항

재배자의 대행업체는 재배자의 농산물 처분을 문서화한 자세한 기록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에는 모든 종류의 수령한 농산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인도 영수증을 발행하며, 각 재배자의 농산물을 구분하기 위한 출하식별번호를 배정하고, 추려진 저품질 농산물 처분을 주적하며, 각각의 판매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밝혀주는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대행업체가 재배자와 합의하여 공동 판매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회계는 공동 판매 비용과 판매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행업체는 가끔 여러 재배자들의 농산물 판매를 동일한 시기에 취급합니다. 이 때문에 PACA는 대행업체들이 각각의 재배자에게 오류 없는 회계를 보장하기 위해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대행업체들은 재배자를 대신하여 청과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기기에, 윤리적 및 법적인 중요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신탁 보호에 대한 재배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반드시 항상 재배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합니다.

재배자에 대한 회계

PACA에 의하면 대행업체들은 재배자에게 즉각적이고 정확하고 자세한 회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별도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없을 경우, 중간 회계는 대행업체가 판매용 청과물 배송분을 처음으로 수령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로부터, 대행업체는 매 10일마다 회계 사항을 재배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최종 회계는 대행업체가 해당 계절의 마지막 배송분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행업체는 이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며, 구매상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재배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행업체가 지불을 보장한 경우나 신용 연장에 태만한 경우, 대행업체는 재배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행업체는, 재배자의 청과물을 판매할 때 반드시 재배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만약 대행업체가 여러분의 농작물을 제대로 다루었는지 혹은 올바른 금액을 지불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판매 대행업체가 제대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PACA 전문가(아래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PACA 법은 공정성을 보장하며 여러분을 돋기 위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무료 번호 800-495-7222로 전화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www.ams.usda.gov/paca.

필요한 경우, PACA 지국을 통해 대행업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접수하면 PACA 지국은 양 당사자들로부터 모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순이익을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PACA 담당자가 대행업체의 기록들을 감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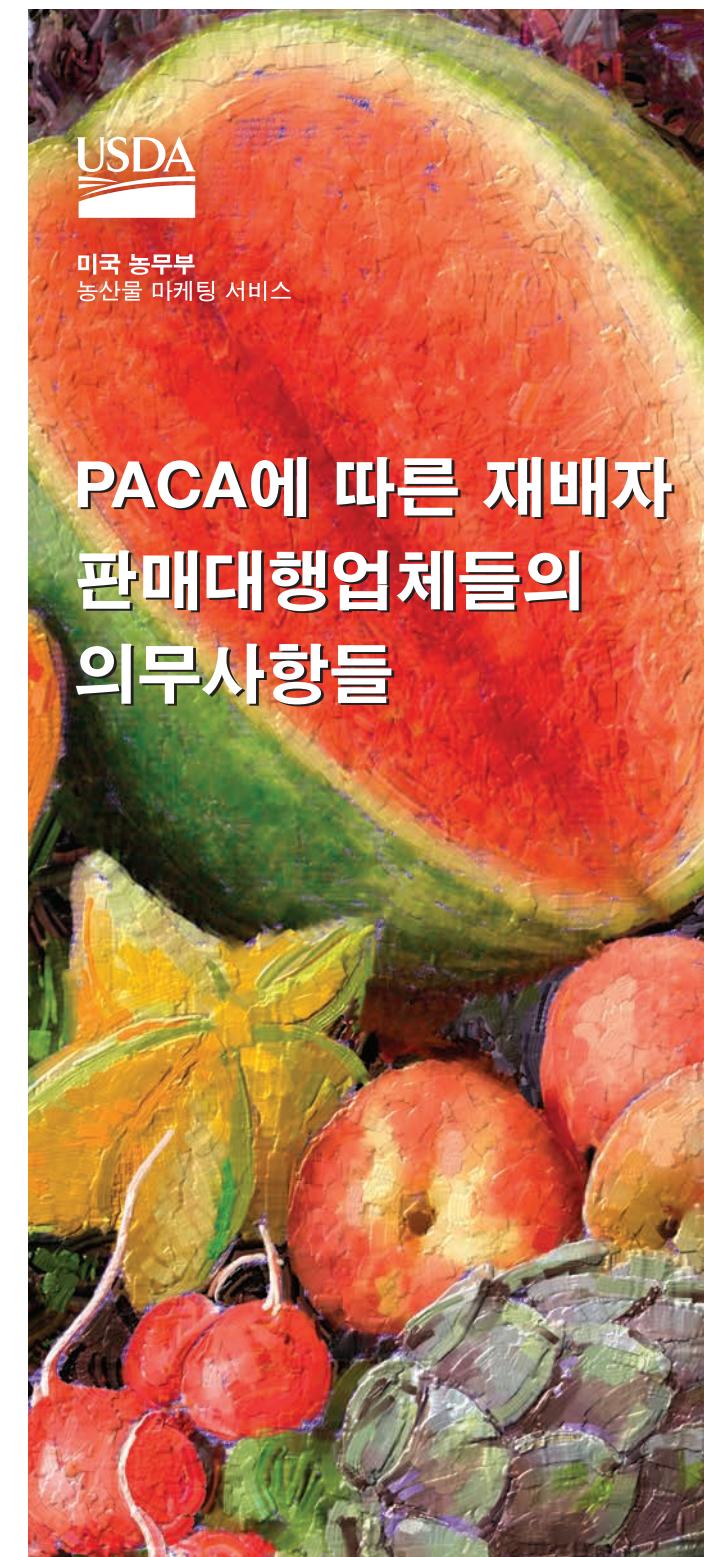
PACA 지국은 또한 대행업체와 재배자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돋기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정은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므로, 종종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조정은 법적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시키고 양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환경에서 자신들의 차이점을 주장할 수 있는 중재의 장을 제공합니다.



미국 농부부 농산물 마케팅 서비스

미 농부부(USDA)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 장애 및 경우에 따라 성별, 결혼 여부, 가족 관계, 자녀의 유무, 종교, 성적 성향, 정치적 신념, 유전 정보, 보복, 또는 개인 수입의 일부 혹은 전체가 공공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왔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모든 금지 사항들이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정보의 소통을 위하여 대체 수단(접두, 큰 활자 인쇄판, 오디오테일 등)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분들은 USDA의 TARGET 센터에 (202) 720-2600(음성 전화 및 청각장애용 전화)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에 대한 불만사항을 신고하시려면, 서면 작성하셔서 다음 주소 (USDA,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Stop 9410, Washington, DC 20250-9410)로 보내시거나, 다음 무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866) 632-9992(영어) 또는 (800) 877-8339(청각장애용 전화) 또는 (866) 377-8642(영어 연방 중계) 또는 (800) 845-6136(스페인어 연방 중계). USDA는 기회와 취업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PACA에 따른 재배자 판매대행업체들의 의무사항들